

(주)이테크시스템 부패방지 정책

목 차

- I. 목적
- II. 적용 범위
- III. 감독 및 관리
- IV. 뇌물수수와 부패금지
- V. 허용 가능한 비용
- VI. 급행료 지불 불허
- VII. 정치적 헌금이나 활동 금지
- VIII. 행사후원 및 자선기부
- IX. 정확한 장부기록
- X. 청탁과 강청 신고
- XI. 비즈니스 파트너
- XII. 부적절한 행동 금지
- XIII. 교육
- XIV. 신고 및 보복금지
- XV. 징계 조치
- XVI. 부칙

2022년 5월 27일

(주)이테크시스템 감사팀

I. 목적

본 정책은 이테크시스템이 비즈니스를 영위함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내 부패방지 관련 법령과, 미국 FCPA(Foreign Corrupt Practice Act), 영국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 OECD 부패방지협약(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s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기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등의 법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II. 본 정책은 이테크시스템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본 정책은 근무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이테크시스템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이테크시스템 전직원은 회사 업무 수행 시 본 정책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특정 직원들에게 준법(Compliance) 직책을 부여하였습니다. 준법 담당자는 이테크시스템 직원들이 본 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도울 것이며 부패 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시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지만, 준법 책임은 이테크시스템 직원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소재한 이테크시스템 사업장은 현지 법규를 따르기 위해 또는 현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로 세부적인 부패 방지 지침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III. 감독 및 관리

이테크시스템 CCO(Chief Compliance Officer)는 본 정책 및 당사의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CCO의 감독 하에, 당사의 감사팀장은 본 정책의 준수를 감독하며, 일상적인 문의와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정책의 문의 또는 승인요청은 아래 연락처로 합니다.

전화: 02-6004-7152 또는 이메일: audit@etevers.com

IV. 이테크시스템은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과 부패를 금지합니다.

● 무엇이 뇌물수수와 부패로 간주되는가?

뇌물수수는 정부관리, 거래처, 고객 또는 장래 고객을 포함하여, 개인에게 그 사람이 자신의 공무상 또는 업무상 지위를 가지고 한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혜택(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할 때 발생합니다.

뇌물수수는 때로는 명백하고, 때로는 매우 모호합니다. 이테크시스템 직원은 잠재적 뇌물수수와 부패를 나타내는 적신호를 인지하고 그에 대해 본 정책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할 책임이 있습니다.

뇌물 관련 법은 정부관리와 사적인 개인, 모두의 뇌물수수와 부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뇌물수수는 회사와 관련 개인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므로, 이테크시스템의 직원은 정부관리를 대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어떤 유형의 혜택이 ‘부적절한 대가’를 구성할 수 있는가?

‘부적절한 대가’는 광범위한 개념이며, 이에에는 현금, 현금 등가물(상품권 등), 식사, 향응, 여행, 선물, 취업, 계약, 어떤 사람의 사적인 부탁을 처리해주는 것과 같은 현물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유형, 그러한 유형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누가 정부관리인가?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정부관리는 광범위하게 정의됩니다. 정부관리에 포함되는 인적 범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되는 공직자 및 공직자 등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공무원 및 기타 정치적 피지명인(국가원수, 장관 등)
- ② 정부의 정규 또는 비정규 직원, 공무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민간시민 포함
- ③ 보안요원(군인, 경찰 등), 판사 및 입법자
- ④ 국가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기업의 책임자 및 직원(국영회사 등)
- ⑤ 대학, 실험기관, 병원 등을 포함하는 기타 공공기관의 직원

V. 허용 가능한 비용

경조사 기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비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의 법률’ 기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 입니다.

VI. 이테크시스템은 급행료 지불(Facilitating Payments)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급행료 지불은 전세계 대다수 국가들의 법에 의거하여 불법입니다. 이테크시스템은 모든 해당 법에 부합하는 자사의 정책에 따라, 급행료 지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급행료 지불 요청을 받는 경우, 지불을 거절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한 지불 비용을 부담하고 비용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급행료 지불 요청은 CCO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VII. 회사 자원은 정치적 현금이나 활동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후보자, 정당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어떠한 기부 또는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개인적 현금에 대하여 회사가 변제해 주지 않습니다.

VIII. 자선기부 및 행사후원은 다음과 같이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사회에 이바지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행사를 후원하거나 자선활동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쓰는 자금이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으며, 수혜자에게 적합한 목적으로 제공되도록 확실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행사후원 또는 기부는 CCO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특별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행사 등**

- ① 행사나 자선단체가 정부관리 또는 그의 가까운 가족이나 동업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 ② 그러한 후원 또는 기부를 정부관리가 요청하는 경우
- ③ 행사주최자 또는 자선단체가 자금의 사용에 관해 투명하지 않은 경우
- ④ 자금을 요구하는 측이 알려진 설립된 단체가 아닌 경우
- ⑤ 행사주최자나 자선단체가 기부금을 현금으로 요청하는 경우
- ⑥ 어떠한 사실 또는 상황이든지 기부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일으키는 기타 사실 또는 상황

IX. 이테크시스템은 정확한 장부와 기록(Books and Records)을 유지합니다.

이테크시스템은 법에 따라 완전한 장부, 기록을 유지합니다. 모든 업무서류에서 지출은 그 금액뿐만 아니라 지출의 성격이나 목적에 대해서도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록은 절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록은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기타 제삼자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영업거래나 금융거래를 포함한 모든 사업정보는 적시에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재무정보는 실제 거래를 반영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은 자금이나 자산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X. 청탁과 강청(強請)은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관리나 다른 사람(장래 고객 등)이 부적절한 청탁이나 강청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하며, 이러한 청탁 또는 강청은 CCO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청탁은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하여야 합니다.

XI. 우리는 비즈니스파트너에게도 동일한 행동을 취하도록 요청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즈니스파트너에게도 적법한 서비스를 수행하고 본 정책과 준칙에 명시된 윤리적 및 전문적 행동기준을 충실히 지킬 것을 요청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 주의합니다.**

- ① 정부관리가 새로운 비즈니스파트너를 추천합니다.

- ② 정부관리 또는 그와 가까운 사람이 비즈니스파트너의 사업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 ③ 비즈니스파트너가 그 일을 하도록 고용되었음에도, 그 일을 수행한 경험이 없거나, 또는 단지 정부관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때문에 고용된 경우,
 - ④ 비즈니스파트너가 의심스러운 발언('내가 알아서 할 테니, 묻지 마시오'), 투명하지 않은 구조 또는 어떤 사안의 비밀을 고집하는 경우,
 - ⑤ 비즈니스파트너의 수수료 또는 수익 마진이 업계표준 또는 그 업체가 제공할 작업의 유형에 비하여 높습니다.
 - ⑥ 비즈니스파트너가 '은밀하게' 또는 '해외계좌'로 지불 받기를 원합니다.
 - ⑦ 비즈니스파트너가 부패방지 보호조항이 있는 계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합니다.
 - ⑧ 비즈니스파트너가 허위청구서를 제출, 청구서나 청구된 지출비용을 증빙하는 문서의 제출을 거부합니다.
- **이테크시스템은 비즈니스파트너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파트너의 행동이 우리 회사를 위한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XII. 이테크시스템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고객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테크시스템 직원은 고객을 위해 일하며, 부적절한 지불이나 기타 부적절한 상황에 자신이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우려를 일으키는 상황에 처할 경우, 즉시 자신의 상사와 논의하거나 CCO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XIII. 교육

CCO는 부패방지 원칙에 관한 연례교육을 시행합니다. 모든 직원은 본 교육을 이수하여, 본 정책을 읽고 이해하고 충실히 따르며 위반하지 않습니다.

XIV. 신고와 보복금지

본 정책을 위반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의심스러운 직원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직원은 지체 없이 CCO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호됩니다. 다만,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테크시스템은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태이든 보복을 당한다고 생각되면 CCO에게 알려야 합니다.

XV. 징계조치

본 정책을 위반하는 직원은 최고 해고를 포함하는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징계와 별도로 개별적인 민사/형사 기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본 정책을 위반하는 비즈니스파트너와의 거래는 단절될 수 있습니다.

XVI. 부 칙

본 정책은 2019년 5월 1일 제정·시행 한다.

(주)이테크시스템 감사팀